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징수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과	3

(2017. 6. 13)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24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5.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12.27.공포, 2017.3.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6. 주요 개정 내용

-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안 제3조)
- 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 판단기준 규정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안 제4조)
- 다.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3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법령과의 관계(안 제 2조), 시행규칙(안 제 5조)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12.27.공포, 2017.3.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함과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세자의 상벌기준을 규칙으로 명시하여 많은 성실납세 구민들에게 투명한 법집행으로 세금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24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5.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12.27.공포, 2017.3.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6.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등 인용조문 변경(3개 조문)

- 지급대상(안 제2조), 지급(안 제7조), 환수(안 제8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4개 조문)

- 목적(안 제1조), 지급대상(안 제2조), 지급기준(안 제3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안 제4조)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12.27.공포, 2017.3.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